

# 삼양홀딩스 협력사 행동규범

**SAMYANG**  
HOLDINGS CORPORATION

## 1. 제정목적

삼양홀딩스는 '공정한 거래문화를 확립함으로써 협력업체와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윤리경영 원칙에 따라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협력사와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인권경영, 안전보건경영, 환경경영, 윤리경영, 경영시스템 5 가지 분야의 삼양홀딩스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 2. 적용범위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삼양홀딩스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본 행동규범을 적용 받는 협력사의 거래업체 (하위 협력사) 또한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3. 협력사 행동규범

본 행동규범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기준,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준수합니다. 다만,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1) 인권경영

#### 1)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여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5 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만 18 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및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안전보건 상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3) 차별금지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에게 채용, 승진, 보상, 교육 등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인종,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여부,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 4)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직장 내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피해발생 시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 사례 발생시에는 즉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진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임금 및 근로시간

협력사는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2) 안전보건경영

### 1) 산업안전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발생 가능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 활동을 통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도를 파악, 평가 및 관리해야 하며,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2) 비상사태 대비

화재 및 안전사고, 자연재해, 집단감염 등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피, 후속조치, 복구 계획 등의 비상 사태 대응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탈출 시설, 화재 감지 및 소방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 3) 산업재해 및 질병 관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부상과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사례를 조사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4) 육체적 과중 업무 통제

과중한 육체 노동의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육체 노동에는 수작업,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반복적이거나 체력소모가 심한 조립 작업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또는 순환근무/스트레칭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 5) 위생 및 식품, 주거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보관,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와 난방, 환기장치, 적당한 개인 공간,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6)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 훈련 및 작업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보건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는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3) 환경경영

#### 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준수

협력사는 필수 환경 인허가 사항(예: 배출/방지시설 설치, 운영 및 변경 신고)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제품 내 물질에 대한 정보 표시, 특정 물질 사용의 금지 및 제한 등과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3)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협력사는 생산/정비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원료 대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폐수와 폐기물 등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용수 등의 자연 자원 이용 효율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 4) 유해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거나 제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구매에서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물질의 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5)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고 적용해야 합니다.

#### 6) 생물 다양성

협력사는 자연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장 주변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와 요인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생물 다양성 관련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4) 윤리경영

##### 1) 사업 청렴성 준수

협력사는 모든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품, 기타 형태의 이득 제공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부패 자율 준수를 실천해야 합니다

##### 2) 공정 거래

협력사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 3) 정보 공개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정보공개 관련법규와 업계 관습에 근거하여 재무/비재무 성과와 구조,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 4) 개인 정보 보호

협력사는 사업과 관련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취득하고 이용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 정보 취급 및 활용에 대한 관련법을 준수 및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5) 지적 재산 보호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삼양 그룹과의 업무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 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6) 내부고발자 보호

협력사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5) 경영시스템**

### **1) 자율준수 의지표명**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경영 시스템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해야 합니다.

###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협력사는 경영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 및 실행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며, 경영진은 경영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3) 목표 관리**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 대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4)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이를 경영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 **5) 교육 관리**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성과를 개선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야 합니다.

## **4. 부칙**

- (1)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2023. 05. 26. 부로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별첨. 문건 요약]**

| 구분      | 내 용                                                    |
|---------|--------------------------------------------------------|
| 최초 제정일자 | 2023. 05                                               |
| 최근 개정일자 | 2023. 05                                               |
| 담당조직    | 삼양홀딩스 통합구매실 원부원료팀                                      |
| 승인자     | 삼양홀딩스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
| 제·개정내용  |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
| 담당자 연락처 | E-mail: seungkwon.chung@samyang.com<br>전화: 02-740-7832 |